

-번역본-

**한국 TÜV SÜD 그룹 회사들을 위한 제3자의 인도 및 용역(Deliveries and Services) 구매 일반거래조건
(이하 "GTC")**

TÜV SÜD Region Korea 2015. 2. 12. 개정, KR

TÜV SÜD가 계약조건(견적서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을 고객에게 제시하였을 시, 고객 측의 당해 계약조건 승인은, 서면상으로 달리 동의 되지 않는 한, GTC를 사실상 TÜV SÜD와 고객 (이하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일부로서 승인함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서면상의 서명과 동의 없이는 일반거래조건에 관해 어떠한 수정도 효력이 없다는 것과 본 계약은 완전한 합의이며 양 당사자간의 이전의 여하한 구두 혹은 서면 동의를 대신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 계약의 체결, 취소, 서면 양식, 비밀 유지, 하도급 금지, 주문 목적물의 변경

1.1 계약체결 회사(이하 "**계약자**")와 한국 내 TÜV SÜD 그룹의 회사들, 즉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투아이에프씨 29층에 본점(registered office)을 두고 있는 TÜV SÜD Korea Ltd.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빌딩 1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TÜV SÜD KOCEN Ltd.(이하 총칭하여 "**고객**", 그리고 계약자와 고객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간의 다음의 계약(이하 "**본 계약**")과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는 전적으로 한국 TÜV SÜD 그룹 회사들을 위한 제3자의 인도 및 용역(Deliveries and Services) 구매 일반거래조건("**GTC**")과 기타 서면 계약에 의한다. 계약자의 표준 거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이 명백한 이의 없이 인도 및/또는 용역을 승인한 것이 고객이 계약자의 인도 조건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TC에 따른 인도는 상품의 인도와 작업 및 용역에 대한 계약 모두를 의미한다.

1.2 고객이 철회할 때까지, GTC는 계약자와의 모든 장래의 계약 관계에 적용된다. 합의된 변경은 서면으로 승인된 주문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3 서면으로 발급되고 승인된 주문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것은 구두 합의 또는 본 계약에 대한 후속 변경에도 적용된다.

1.4 계약자가 수령일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주문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1.5 계약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사업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모든 공개되지 않은 상업적 또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영업비밀(commercial secrets)로 취급하는데 동의한다.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참조로서 언급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하도급 계약자도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서류를 분실한 사실을 계약자가 발견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교부된 서류에 포함된 생산 지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만 그 범위에 한해서 종료된다.

1.6 계약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1.7 고객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문 목적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본 계약의 조항은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1.8 GTC 혹은 본 계약서의 그 어떤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계약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검토할 전적인 권한을 갖고, 만일 고객이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 측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여길 경우 (본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 혹은 본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은 계약자가 고객이 상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2. 가격, 선적, 포장

2.1 합의된 가격은 고정된 가격이고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요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자의 보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한 한다. 모든 가격은 포장을 포함하여 구매 주문에 기재된 도착지의 DDP(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 인코텀즈 2010년 제7차 개정본 기준)로 이해된다. 가격이 주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문 당시 유효한 계약자의

표시가격이 기본 공제와 함께 적용된다.

2.2 출장, 견본/표본 또는 제안 준비,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는 지불을 하지 않는다.

2.3 고객은 선적 후에 지체 없이 종류, 양 및 무게에 관한 정확한 세부항목을 표시한 출하 통지를 통하여 모든 인도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출하 통지, 운임 청구서, 송장 및 모든 서신에는 고객의 주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 위험한 물건의 운송을 규제하는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상품은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2.5 예정일 이전의 인도, 초과 인도, 총량에 미달하는 인도 또는 일부 인도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된 일부 인도의 경우에는 잔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2.6 선적이 고객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인도되는 동안 계약자가 전적인 위험부담을 진다.

2.7 포장재를 회수할 계약자의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과도한 포장은 삼가져야 한다. 오직 친환경 포장 재료만이 사용될 수 있다. 포장재는 따로 청구되는 경우, 고객은 이상이 없는 포장재를 계약자에게 무료로 반환할 권리를 갖는다. 포장재가 반환된 경우 계약자는 고객에게 송장에 표시된 포장비용의 3분의 2를 상환하여야 한다.

2.8 계약자는 계약서상 모든 급여, 사회보장연금, 고용관련급여 혹은 계약자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된 세금에 대한 독점적 의무를 지며 이 세금에 관련된 모든 의무, 보고 그리고 신속한 통지에 대한 독점적 의무를 지닌다. 고객은 이와 같은 세금을 지불하거나 원천징수할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2.9 계약조기해지 시, 계약자는 전체 계약 금액 중 고객이 승인한 계약상의 상품과 의무이행 내용에 비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이러한 상품과 계약 수행 사항에 관련된 적절하게 기록할 책임과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록은 계약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3. 서류, 안전 장치, 산업재산권

3.1 보관, 조립 및 조작 설명서와 기타 필요한 안전 장치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도 품목의 유지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도 적용된다.

3.2 계약자는 모든 필수적인 자료와 함께 고객이 요청하는 원본 증빙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무료로 지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고객이 주문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하였거나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이행 기록, 특히 도면, 치구 및 고정구, 공구, 모형 등에는 고객의 소유권이 유지된다. 계약자는 오직 계약상 합의된 목적으로만 이들을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주문이 수행된 이후에 위에 언급한 품목들은 예외 없이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4 계약자는 모든 인도품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고 특히 인도와 인도 품목의 사용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및 저작권 또는 기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3.5 계약자는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야기된 제3자의 모든 청구로부터 고객 및 고객과 거래한 제3자를 면책하고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6 고객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합법적인 소유자로부터 당해 인도 물품의 사용 승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7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의 상호,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 의무이행만을 위한 합리적인 사용을 벗어나 개별적으로 또는 계약자 자신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사용을 승인한 경우 계약자는 상호, 상표 또는 로고의 크기, 위치 및 레이아웃에 관한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 명시된 해지일로부터, 계약자는 계약상 주어진 고객의 모든 상표, 마크, 상호와 그에 대한 권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이후의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기간 외 사용과 이에 발생하는 요금에 관하여 성심껏

상의하여야 한다.

4. 일자, 계약상 위약금, 철회, 대행

4.1 합의된 인도 일자와 기간은 구속력이 있다. 고객이 지정한 인도 시점에 결함이 없는 선적이나 작업, 혹은 용역의 수령, 또는 적기의 성공적인 수락은 상기 언급한 일자와 기간의 준수 여부에 결정적이다.

4.2 계약상의 위약금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일자 또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계약상의 위약금은 각 지체 일수마다 주문의 순 가치의 0.2%로 계산되나, 주문의 순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계약상의 위약금에 대한 각각의 청구는 합산된다. 고객은 추가적인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는 한편, 계약상의 위약금은 그러한 지체로 인해 야기된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인수 시에 고객이 계약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았던 경우, 최종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상의 위약금은 청구될 수 있다.

4.3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의 경우, 고객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 달리 규제된다. 지체된 인도 또는 지체된 작업과 용역의 수락은 손해배상 청구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이행 또는 해결을 위한 추가 기간을 지정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고객은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을 철회하는 대신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 의하여 주문이 이행되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4.4 계약자는 확인 가능한 인도의 지체에 대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지체 없이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계약자는 서류에 관한 서면 독촉장을 보내고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필수 서류의 부족을 주장할 수 있다.

4.5 고객은 계약자가 계약대로 이행할 역량이 없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서거나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이행이 고객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보증, 보장, 하자에 대한 책임에 따른 청구, 손해, 하자 통지 기간, 보증 기간, 중단, 재개

5.1 계약자는 모든 인도가 합의된 명세서, 특히 최근 승인된 기술 표준, 정부당국, 무역기구 및 전문가 협회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적 법률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장한다. 계약자가 고객이 희망하는 이행 방식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5.2 계약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인도 및 제3자의 인도 또는 부수적인 용역에 있어서 친환경 제품 및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인도한 상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5.3 고객은 운송, 용역, 작업의 모든 명백한 하자를 서면으로 통상적인 영업 조건에 따라 발견한 즉시 지체 없이, 고객의 수령, 인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 기간은 하자 발견 이후 3 영업일 이내로 한다.

5.4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는 보증 기간 동안 고객불만의 대상이 된 운송, 용역 또는 작업의 하자에 대하여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자는 보장된 자료의 미제공 및 보증된 품질의 결여를 포함한다. 고객은 해결방안으로 수리, 결함이 있는 부품의 교체 또는 대체 인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하자의 발견 및 그 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특히 검사 비용, 해체 및 조립 비용, 운임, 운송 비용 그리고 인적 및 물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도 품목이 이행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인도됨으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교대근무 방식으로 또는 초과근무 시간 동안 또는 공휴일에 수리 또는 신규 인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고객의 중요한 영업상의 이유로 필요하고, 이를 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수리 또는 대체 인도를 위하여 고객이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 동안 완료되지 못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철회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에 근거하여 가격을 인하할 권리를 갖는다. 대체 인도를 위해 합의된 기간은 고객이 설정한 기한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

불이행 또는 하자가 있는 이행이 용역의 특정 부분에 한정된 경우, 철회는 해당 특정 부분으로 한정될 수 있고,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5.5 중요한 하자의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른 대체 인도를 위하여 고객이 설정한 기한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은 직접 이행하고 선불금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가 고객이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하자에 관하여 책임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고객은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다. 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 고객은 수리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자의 하자에 대한 책임 의무의 감소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사소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 고객은 그 이후에 계약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실이 임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6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률상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간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고객이 지정한 수령 또는 사용 장소에서 인도 품목의 인도 시에 개시된다. 설치,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증 기간은 고객이 서면 승인서에 언급한 영수검사 일자에 개시된다. 승인이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증 기간은 영수검사 대상의 인도 품목이 제공되는 시점에 개시된다.

5.7 하자에 대한 검사 및/또는 해결 기간 동안 고객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는 물품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보증 기간은 사용 중단 기간만큼 연장된다. 수리 또는 대체 물품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보증 기간은 위험의 이전 이후에 개시된다.

6. 품질 보증, 제조물 책임

6.1 계약자는 그 유형 및 범위에 따라 그리고 기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품질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고객과 적절한 품질 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2 계약자에 의하여 이행된 공장 검사는 인도가 고객의 기술 명세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검사 및 이행된 시험의 기록을 만들고, 모든 시험, 측정 및 검사 결과를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객은 언제든지 그 서류를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6.3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계약자는 계약자의 제품으로 영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 품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6.4 계약자의 상품에 의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적 안전 규정, 대한민국 및/또는 외국의 제조물 책임 규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고객에게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고객은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범위에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손해는 예방적 리콜 조치의 비용 또한 포함한다. 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고객은 계약자에게 리콜 조치의 내용 및 범위를 알려야 하고 계약자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5 추가로 계약자는 리콜 위험을 포함한 제조물 책임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위해 보험 증권을 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본 계약이 고객과 주 계약자의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경우, 계약자는 주 계약자와 고객간의 계약조건이 차후 수정된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것에 동의하며, 계약자의 서비스에 따르는 모든 의무와 책임, 즉 고객이 주 계약자에게 진 계약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한다.

7. 송장, 대금지급, 인증서, 유보권, 양도 금지, 상계, 계약자의 파산

7.1 송장은 인도/용역 또는 작업 및 용역 이후에 모든 적절한 서류 및 자료와 함께 2부를 고객에게 별도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송장은 수정된 일자에 고객에 의하여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7.2 대금지급은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검사 승인 및 송장의 수령 이후에 계산된 송장 기재 금액의 3%를 할인하여 30일 이내에 일반적인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 할인은 고객이 하자 때문에 대금지급을 공제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인 기간은 하자의 완전한 제거 이후에 개시된다. 예정일(Clause 2.5) 이전의 인도는 대금지급을 위하여 합의된 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3 중요한 시험의 인증서가 합의되는 범위에서 인증서는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고객에게 송장과 함께 송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은 송장의 수령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인증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불을 위한 기간은 합의된 인증서의 수령과 함께 개시된다.

7.4 계약자에게 지불할 계약대금의 책정에 있어서, 고객은 어떠한 손해나 벌금, 결산 후 제비용, 청구, 미지급금, 그 외 고객과 계약자 간의 어떠한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제 3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상쇄할 수 있다.

7.5 계약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고객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다. 계약자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자 또는 이전의 효과로 제3자에게 지급할 선택권을 가진다.

7.6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계약자를 제외하고, 고객은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TÜV SÜD 그룹과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 의하여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청구권을 상계할 권리를 갖는다.

7.7 계약자가 지급을 중단하고 그리고/또는 채무초과가 된 경우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계약자의 자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이 본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보장 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상 보장 의무에 관하여 담보로 순 주문 금액의 최소 5%의 금액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8. 준수사항

8.1 계약자는 <http://www.tuv-sud.com/code-of-ethics>에서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는 TÜV SÜD 윤리 규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본 계약에 의하여 확인한다.

8.2 계약자는 그의 직원들이 모든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 내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다. 계약자는 자신 또는 그 직원들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자 또는 그의 직원이 장래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확인한다. 계약자는 형사상 사기 행위, 부정한 배임, 파산법에 의한 형사 범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 범죄, 과도한 이익 또는 뇌물의 공여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진술한다.

8.3 계약자는 모든 필요한 동의 및 권한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취득되었음을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진술 및 보장한다.

8.4 계약자의 과실에 의한 본 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계약자와의 모든 협상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며, 고객과 사이의 모든 계약상 합의를 해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이 계약자에 의한 본 절의 의무의 위반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자는 모든 청구로부터 고객을 면책하기로 본 계약에 의하여 동의한다. 나아가, 계약자는 그러한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본 계약에 의하여 동의한다.

9. 면책

계약자는 고객, 고객의 고용인, 고객의 계열사와 이들의 고용인과 고객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원, 요구, 소송, 손해, 법적 책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손실과 비용으로부터 변호, 배상,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 조항이 포함하는 소송, 청원 등의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0. 비밀유지

10.1 본 계약서상 기밀정보 (이하 "기밀정보")이란 정보의 공개 시점에 "기밀 정보"라 명시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과 관련하여 교환된 소유주의 아이디어와 특허 가능한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과 현존하거나 논의된 상품이나 서비스, 연구개발, 생산, 비용, 이익과 차익, 재무와 재무계획, 고객, 의뢰인, 마케팅, 현재와 미래의 사업계획 및 모델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업무상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기밀정보란 이외 (a) 제공 될 당시 서면상으로 제공되고 기밀사항이라 (혹은 유사한 명칭으로) 표시되었거나 (b)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되며 기밀로 정의되었고 공개 이후 30일 안에 기밀로 요약/지정된 서면상의 각서가 계약자에게 도착한 여타 기밀 혹은 민감한 정보 또한 포함하며 계약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0.2 계약자는 반드시 기밀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0.3 계약자는 기밀정보를 해당 기관 내부의 임원, 직원, 이사 그리고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회원이나 고용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자(개인이나 기업, 혹은 기타 기관에 관계없이)에게 공개할 수 없다. 만일 계약자의 임직원, 대리인, 자문인 그리고 기밀정보에 대한 사용이 허락된 관련자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를 보증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시, 계약자는 상기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 것이다. .

10.4 기밀정보가 (a) 입수되기 전에 소유 되었을 때; (b) 계약자 측 잘못과 관계 없이 공공정보가 되었을 때; (c)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 3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되었을 때; (d)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었거나 고객이 승인이 있었을 때; 혹은 (e)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시, 계약자에게 기밀정보에 관한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다.

10.5 본 조항은 계약자에게 10.2에 명시된 기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 외에 계약상 교환된 정보를 생산, 전달, 이전, 부여, 수여할 어떠한 권한, 면허 혹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 더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에 관한 면허나 전달할 권리를 묵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10.6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한 정보교환은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떠한 계약적 관계에 대해



어떠한 당사자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이후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 제외), 또한 이러한 정보교류가 특정 행동 혹은 행동을 불이행 하도록 유도한다 간주하지 않는다.

10.7 고객은 계약자가 본 계약에 의해 교류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신뢰 하여 발생한 의사결정, 의무, 경비, 비용, 사업상 관행, 계획과 단체, 상품, 서비스나 어떤 변화에 대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

10.8 만약 본 계약의 조항이 위반되거나 위반이 예견될 경우, 계약자는 고객이 법적/금전적 혹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금지 혹은 가처분 신청의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 혹은 본 GTC의 어떠한 조항에 명시된 구제도 본 조항의 위반 혹은 예견되는 위반으로 인한 다른 구제의 포기나 금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11. 상호와 면허사용

11.1 계약자는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만 고객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이로써 고객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어떤 권한, 권리나 이익을 포기한다.

11.2 고객이 계약자에게 재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경우, 계약자는 라이선스를 재부여할 수 없고, 해당 재료를 재생산 하거나 제 3의 당사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1.3 계약 취소 시점부터, 계약자는 고객이 부여한 라이선스, 상표, 라벨, 상호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11.4 계약자는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상표, 마크, 라이선스 및 상호에 대한 고객의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고객의 권리, 권한과 이익을 손상, 충돌 및 분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연루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그러한 상표, 면허 및 상호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 이행, 불이행 혹은 진술에 가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계약자는 고객의 어떠한 서비스 상표, 상표, 면허, 상호 혹은 혼란을 야기할 만한 비슷한 어떠한 것 과도 관련된 권리, 권한 혹은 이익 일체에 대하여 광고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구 혹은 획득할 수 없다.

12. 이익충돌

12.1 계약기간 중 혹은 그 이후, 계약자는 고객이나 TÜV SÜD Group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일체를 할 수 없다.

12.2 계약기간 중 혹은 계약 조기 만료일로부터, 계약자는 TUV SUD Group의 경쟁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자는 현재 혹은 미래의 고객이 i) TÜV SÜD Group 회사와 현재 혹은 미래 계약을 철회하도록; 혹은 ii) TÜV SÜD Group이외 다른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12.3 계약자는 고객에게 계약자가 현재 고객과 경쟁할 어떠한 서비스를 현재 추진 중이거나 대표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계약기간 중 혹은 계약종료 이후에라도, 계약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객의 평판 및 이익과 충돌 하거나, 분쟁을 야기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13. 독립 계약자 관계

계약자와 고객은 독립계약관계에 있으며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부분에서도 고객과 계약자 간에 합자나 합작, 대리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생성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고객의 대리인이 아니며 따라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을 대신하여 계약을 협상하거나, 대변, 계약체결 혹은 약속할 수 없다.

14. 시행가능성 그리고 당사자적격

계약자는 이하 내용에 관하여 고객에게 진술과 보증한다:

14.1 본 GTC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고, 교부 및 통지 되었으며 합법적이고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자의 의무이며, 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이를 보증할 권한이 있다.

14.2 계약자는 적법하게 현존하는 기업이며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그리고 계약상 혹은 계약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계약자의 재정적 상황이나 전망에 각자 혹은 종합적으로 실질적이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나 법적 조치, 행정적 분쟁, 중재, 기타 법적 절차 및 정부가 진행중인 조사가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15. 무역

계약자는 어떠한 품목이나 계약의 이행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무역 규정, EC-규정 또는 국제 수출 금지 또는 수출 제한 규정에 의하여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6. 분리가능성

본 일반거래조건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은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이행 장소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할 의무에 관한 이행 장소는 고객이 지정한 인도 장소로 하며, 양 당사자들의 모든 기타 의무에 관하여는 고객의 본점으로 한다.

18. 계약 언어

본 계약의 언어는 영어이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추가로 다른 언어로 본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영문본이 우선한다.

19. 관할

계약자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기업가인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법적 관할은 고객의 본점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고객은 계약자의 영업 장소의 법원에 소송 또는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20. 보충 법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관계는 법률 규정 및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충돌과 관계 없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된다.

21. 준거법과 언어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제 16조 그리고 17조에 해당하는 조항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혹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적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규율에 따라 임명된 중재자에 의해 조율되며 중재 장소는 서울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규율이 규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재장소 절차법이 효력을 갖는다. 중재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다. 중재자는 3명으로 규정한다.

22. 법원 출두

계약자의 요청이나 계약자의 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소환장이나 기타 당사자로 인하여 고객의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참석할 경우, 계약자는 고객의 법원출두에 대하여 시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한다. 고객은 때때로 법원 출두를 위한 시가를 개정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다.

23. 통지의무

본 GTC가 요구하는, 혹은 제공된 모든 통보, 동의, 요구, 요청, 허가, 기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상호 협의 되어 각 계약서상 서두에 제공된 주소 혹은 이후 서면상으로 변경된 주소로 송부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었다 간주한다.

24. 완전합의, 수정 그리고 권리불포기

본 GTC는 본 GTC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양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는 고객이 제공한 계약 조건과 통합되어 최종, 전체, 완성된, 단독적인 고객과 계약자간의 계약을 구성하며, 계약자의 거래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전의 계약당사자간의 모든 사전 동의, 양해, 약속 혹은 대변된 사항을 대체한다.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본 계약의 수정, 추가, 권리포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본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명령, 인정, 조건, 결제 혹은 어떠한 비슷한 방법으로도 포기, 수정 혹은 추가할 수 없다. 본 GTC 하에서 발생한 어떤 권리, 능력, 특권은 고객이 이의 행사를 지연하거나 실행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 능력, 특권의 단독적 혹은 부분적 행사 또한 그 이외의 다른 권리의 추가적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GTC에서 각 조항의 소제목들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GTC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쓰일 수 없다.

공지:

고객은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PIPA")의 법률 조항에 의하여 계약자의 보호되는 개인 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이 대금지급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TÜV SÜD 그룹(관련 대한민국 상법의 의미 내에서) 내의 계열 그룹 회사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다.